

2017.08.17.기준

건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

대 학 원

대학원 학칙(2-2-1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건양대학교 대학원 학칙(이하 “학칙“이라 한다)은 교육기본법, 고등교육법 및 건양대학교 학칙 제2조에 의거하여,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교“라 한다)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학원의 종류)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.

1. 일반대학원

2. 특수대학원 : 경영사회복지대학원, 교육대학원, 보건복지대학원, 군사경찰행정대학원, 상담대학원, 바이오비임상대학원(개정 2004.11.1)(개정 2006.11.1)(개정 2010.10.26)(개정 2011.5.31)(개정 2012.6.4.)

제3조(각 대학원의 과정)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.

②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.

③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(이하 “각 대학원“이라 한다)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과정을 둘 수 있다.

제4조(학과전공 및 입학정원)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<별표1>, <별표2>와 같다.(개정 2004.11.1)(개정 2005.11.1)(개정 2006.11.1)(개정 2006.11.15)(개정 2007.10.17)(개정 2008.8.12)(개정 2010.2.10)(개정 2010.6.2)(개정 2010.10.26)(개정 2011.5.31)(개정 2012.6.4)(개정 2012.8.20.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대학원에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)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(개정 2008.8.12)

1.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

2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

3.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·중·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
4. (삭 제 2004.11.1)

③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대학원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계열별 또는 학과별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.

제2장 신입학 · 편입학 · 재입학

제5조(입학시기) 각 대학원의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)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입학 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한다.(개정 2004.11.1)

제6조(입학자격) ①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며, 교사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(표시과목이 없는) 전공은 일반인도 모집할 수 있다.

(개정2005.10.24)

1.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예정자

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

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

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

3. (삭제 2010.10.26.)

제7조(입학지원 절차) ①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원서 및 전형관련 서류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전형관련 서류의 종류 및 전형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(개정 2004.11.1)

제8조(입학전형)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,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하며,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전형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. 또한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.

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(개정 2004.11.1)

제9조(입학허가)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제10조(입학전공분야) 박사 및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
제11조(재입학)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)

②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. 단,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.(개정 2016.2.5)

③ (삭제 2016.2.5.)

④ 재입학자는 제적 전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⑤ 재입학자에 대한 장학금은 당해연도 기준을 적용한다.(신설 2016.10.10.)

제12조(편입학)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)

②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동일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다. 단, 본교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.

(개정 2004.11.1)

③ 석사학위 과정은 2학기 이내에 박사학위 과정은 3학기 이내에 편입학 할 수 있고, 타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전공에서 대체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(개정 2004.11.1)

제3장 등록 · 수업 · 휴학 · 복학 · 제적 · 퇴학 · 부전공

제13조(등록)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등록학기의 횟수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.

1.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: 6학기

2.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과설립목적에 따라 5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06.2.13)(개정 2006.11.1)(개정 2010.10.26)(개정 2011.5.31)(개정 2012.6.4)(개정 2014.3.11.)

3. (삭제 2011.5.31.)
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내에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, 재등록을 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각 호의 학점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. 단 대학원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대상기준은 유지된다(신설 2004.11.1)

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.

2.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

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.(신설 2013.8.22.)

⑥ 제5항에 의한 분할납부 대상자는 정해진 분납기간에 일정금액 이상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분납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할 수 있다.(신설 2013.8.22.)

제14조(수업) 대학원의 수업은 학과 및 전공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교과 특성상 통합

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.

제15조(학기, 수업일수 및 휴업일) 수업일수 및 휴업은 본교 학칙 제3장(학년, 학기, 수업일수 및 휴업일)에 준한다.

제16조(휴학)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 수업일수의 3분의1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.)(개정 2008.8.12.)(개정 2013.6.19.)

②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일반대학원 석사과정,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: 3개 학기(개정 2011.5.31)(개정 2013.6.19.)

2. 일반대학원 박사과정, 전문간호사과정 : 4개 학기(개정 2011.5.31.)(개정 2013.6.19.)

3. 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의견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13.6.19.)

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과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2항의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, 출산, 육아(24개월 미만)를 위한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(신설 2013.2.12.)(개정 2016.10.10.)

제17조(복학) ① 휴학 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(개정 2004.11.1)

②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복학을 허락한다.

③ 미등록 휴학한자가 제1항에 의거 복학 할 시에는 복학하는 당해 학기의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.(신설 2004.11.1)

제18조(제적)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.

1.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
2.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
3.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
4.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

제19조(퇴학) 자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각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0조(전공변경) ① 전공의 변경은 1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하여, 재학기간 중 1회만 허락한다.
(개정 2016.10.10.)

②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전공변경원

2. 기 이수학점 및 성적표

3. 소속학과 및 변경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

제21조(부전공) 각 대학원의 학생은 주전공 과목이외에도 부전공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.

제4장 수업연한 · 교육과정 · 학점 · 성적 및 수료

제22조(수업연한) 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6학기,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과설립목적에 따라 5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06.2.13)(개정 2007.8.13.)(개정 2010.10.26.)(개정 2011.5.31.)(개정 2012.6.4.)(개정 2014.3.11.)

② 각 대학원의 연구과정은 2학기로 한다.

③ 본교와 협정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이는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다.(신설 2017.8.17)

제23조(재학년한) ① 각 대학원의 재학년한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.

1.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: 10학기이내(개정 2006.2.13)(개정 2007.8.13)(개정 2014.3.11.)

2.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: 6학기이내, 단 간호학과 전문간호학과정은 10학기 이내(개정 2014.3.11.)

3. 특수대학원 : 10학기이내(개정 2005.11.1.)(개정 2010.10.26.)(개정 2011.5.31)(개정 2012.6.4.)(개정 2014.3.11.)

②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.

③ 재학년한의 산출시 휴학기간,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 단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(개정 2004.11.1)

④ 석사학위 논문은 과정수료 후 5년 이내에, 박사학위 논문은 과정수료 후 10년 이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.)(개정 2013.6.19.)

제24조(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② 각 대학원간에 공동교과목을 개설하고자하는 학과 또는 전공은 해당 전공주임교수가 교과목을 편성하여 해당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25조(수업) ① 각 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 특성에 맞게 자율운영이 가능하다.(개정 2007.8.13.)(개정 2010.10.26.)(개정 2011.5.31)(개정 2012.6.4.)(개정 2014.3.11.)(개정 2017.8.17.)

② 세부지침은 대학원 수업운영 내규를 따른다.(개정 2006.2.13)(개정 2017.8.17)

③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보건, 학·군제휴 등 상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학 내의 별도의 장소에서 강의를 개설 할 수 있다.

제26조(학위과정의 수료)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간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 및 전 과목 평점평균이 B0(3.0) 이상인 학생에 대해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 (개정 2013.2.12.)

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,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으로 한다. 단,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간호학과 전문간호학전공은 33학점(전공실습 10학점 포함)으로 한다.(개정 2006.2.13)(개정 2007.8.13)

③ 각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일로 하며,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.(개정 2004.11.1)

제27조(학기당 수강신청학점) ①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은 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. 단, 대·내외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은 수강신청학점 제한에 적용 받지 않는다.(개정 2007.8.13.)(개정 2010.2.10.)(개정 2010.10.26.)(개정 2011.5.31)(개정 2012.6.4.)(개정 2012.8.20.)(개정 2013.11.04.)(개정 2014.3.11.)

②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교외 전임직에 재직하는 학생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. 단, 이를 초과해서 수강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.(신설 2013.11.04.)

③ 선수과목 수강신청은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(신설 2014.3.11.)

제28조(선수과목 이수) ① 각 대학원장은 비 동일계열 입학생에 대하여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선수과목 이수는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나 대학원 졸업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 단, 교육대학원은 졸업학점으로 포함한다.(개정 2011.5.31.)

③ 각 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04.11.1)

제29조(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) ①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을 희망하는 학부학생은 학부(과)장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 학과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과목 수강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2과목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)

제30조(교내·외 대학원과의 학점교류) ① 각 대학원 재학 중 국내·외 정규 대학원(본교 포함)에서 본인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수

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. (개정 2006.11.1)(개정 2007.10.17)

② 각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타 대학 대학원 또는 본교에 설치된 타 대학원(공개강좌 포함)과 협의하여 강의를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, 이를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교내외 대학, 대학원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(개정 2004.11.1)(개정 2006.11.1)

제31조(성적평가) 학업성적은 시험성적, 연구과제, 출결사항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며, 그 등급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| 실 점 | 등 급 | 평 점 |
|--------|-----|----------|
| 95~100 | A+ | 4.01~4.5 |
| 90~94 | A0 | 3.51~4.0 |
| 85~89 | B+ | 3.01~3.5 |
| 80~84 | B0 | 2.51~3.0 |
| 75~79 | C+ | 2.01~2.5 |
| 70~74 | C0 | 1.51~2.0 |
| 0~69 | F | 1.5이하 |
| 합격 | P | |
| 불합격 | NP | |

제32조(학점인정)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3/4이상, 성적등급은 C0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은 B0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 P등급의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.

제5장 학위수여

제33조(학위의 수여 및 종별) ① 각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<별표1>,<별표2>의 학위종별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.(개정 2004.11.1)(개정 2005.11.1)(개정 2006.11.1)(개정 2006.11.15)(개정 2007.10.17)(개정 2008.8.12)(개정 2010.2.10.)(개정 2010.6.2)(개정 2010.10.26)(개정 2011.5.31.)(개정 2012.6.4.)(개정 2012.8.20.)

② 특수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에 한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24학점 이외에 학위청구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면 석사학위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)(개정 2006.11.1)(개정 2014.8.6.)

③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,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.

④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

여할 수 있다.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신설 2013.6.19.)

제33조의 2(수료자 등록) 총장의 승인을 받은 특수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수료자 중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수료자 등록을 한 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(신설 2014.8.6.)

제34조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석·박사학위 과정 학생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시험과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① 삭제 (삭제 2004.11.1)

② 삭제 (삭제 2004.11.1)

제35조(명예박사학위) ①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2/3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장이 수여할 수 있으며,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 할 수 있다.

제36조(논문제출자격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(개정 2008.8.12)

1.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또는 당해학기에 취득예정인 자
2.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3.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4.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

제37조(논문심사)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(개정 2004.11.1)

제38조(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) 총장은 석사,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6장 학생지도 · 활동 및 장학금

제39조(학생의 의무) 각 대학원의 학생은 본 대학원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, 학과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40조(학생회)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 및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.

제41조(징계)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
제42조(장학금)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공개강좌 · 연구생 · 위탁학생 및 외국인 학생

제43조(공개강좌) ① 각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·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의 과목기간·수강정원·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(개정 2004.11.1)

③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 또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44조(연구생) ① 각 대학원의 석·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)

②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.(신설 2004.11.1)

④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.(신설 2004.11.1)

⑤ 연구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.(신설 2004.11.1)

제45조(위탁학생) 각 대학원은 민·관·군 등 외부 관련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(개정 2004.11.1)

제46조(외국인 학생) 외국인으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으로 정원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)

제8장 교외지역에서의 강좌 개설

제47조(교외지역 강좌개설) 각 대학원은 동일 과정에 등록된 다수의 학생이 지리적 여건상 본교 캠퍼스에서 수업하기 어려운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장에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)

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

제48조(대학원위원회의 구성)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교원 중에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04.11.1)

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은 각 대학원장, 처장 및 직전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학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.(개정 2004.11.1)(개정 2007.2.15)(개정 2008.8.12.)(개정 2010.6.1.)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(신설 2004.11.1)

제49조(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) 각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본 학칙 및 대학원 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
6.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49조의1(대학원위원회의소집 및 의결사항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(신설 2004.11.1)

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04.11.1)

제50조(주임교수) 각 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전공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(개정 2004.11.1)

제51조(전공주임교수회) 각 대학원에 전공주임교수회를 두며 입학, 수료, 학위수여, 교육과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 후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한다.

제10장 학군제휴

제52조(학군제휴 입학) 학군 위탁교육에 관한 학군제휴 협약서(이하 “협약서“라 한다)에 의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군 위탁생은 정원 내 에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군 위탁생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로 교육부 통보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직접 추천한 군 위탁생만 별도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다.(개정 2005.11.1)
2. 입학자격은 이 학칙 제6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.
3. 등록금은 반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학칙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4. 학점의 인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가. 군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05.11.1)
- 나.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경시 소속대학원의 승인 하에 협약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6내지 12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- 다. 학위수여를 위한 자격시험(외국어 및 종합시험)은 각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라.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는 각 대학원의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. 단, 제 52조 ①항에 의한 군위탁생은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소속학과의 전공과 관련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.(개정 2005.11.1)
- 마. 각 대학원은 필요시 군내 전문가를 논문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하게 할 수 있다.

5.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칙과 협약서에 의한다.

제53조(준용규정)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양대학교 학칙을 따른다.

제54조(시행세칙의 제정)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건양대학교 대학원학칙, 경영행정대학원학칙, 교육대학원학칙, 보건대학원학칙, 정보통신대학원학칙은 폐지된다.

제3조(경과조치)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.

② 본 대학원 학칙 시행 전 각 대학원별 입학자가 본 대학원 학칙 적용을 희망 할 경우 이를 적용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학칙개정) 본 대학원 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학칙 개정일 이전 실버서비스산업학과 치유선교학전공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신설된 치유선교학과 소속으로 변경 한다.

② 정보통신대학원은 학칙 개정일로부터 폐원하고, 그 입학정원5명은 2005학년도 신입생모집부터 경영행정대학원 입학정원 에 포함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0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의 변경된 학위종별(행정학석사→사회복지학석사)은 200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0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학칙 개정일 이전 경영행정대학원 군사학과 재적생은 2007학년도 신설된 국방관리대학원 군사학과로 소속변경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보건복지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위치변경 인가에 따라 2006년 3월 1일부터 대전캠퍼스에서 운영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학칙개정일 이전 경영행정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시기부터 경영사회복지대학원과 군사경찰행정대학원으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보건복지대학원 병원관리학과의 변경된 학위종별(병원경영학석사→보건학석사)은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의료관광학과는 2014학년도부터 의료관광마케팅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대학원 학칙 제27조(학기당 수강신청학점)은 2014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33조의 2는 본 학칙 개정 이전 수료생에 대해 소급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병원경영학과, 의과학과(시과학전공)의 변경된 학위종별은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1조는 2016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6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대학원 학칙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대학원 학칙 제22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| 계 열 | 학 과 | 연도별 개설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학위종별 | 수업 장소 | | | |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| | '95 | '96 | '97 | '98 | '99 | '00 | '01 | '02 | '03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 | '11 | '12 | '13 | '14 | | | '15 | '16 | '17 | '18 |
| 예능 | 조형예술학과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미술학석사 | |
| 의학 | 의학과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의학석사 | | |
| 입학정원 | | 40 | 40 | 20 | 20 | 20 | 50 | 50 | 50 | 50 | 50 | 50 | 70 | 76 | 88 | 88 | 85 | 77 | 71 | 68 | 91 | 83 | 93 | 93 | | | |

- ※ 2012.8.20.부로 건설시스템공학과→건설환경공학과로 학과명 변경
- ※ 의료뷰티학과 계열을 인문사회계열→자연과학계열로 변경(2015학년도부터 적용)
- ※ 특수교육학과→교육학과로 학과명 변경(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
- ※ 의료뷰티학과는 일반대학원→보건복지대학원으로 소속변경(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
- ※ 의과학과는 전공에 따라 학위종별이 상이함
물리치료학전공(물리치료학석사), 방사선과학전공(방사선과학석사), 시과학전공(이학석사), 응급구조학전공(응급구조학석사), 임상병리학전공(이학석사),
작업치료학전공(작업치료학석사), 치위생학전공(치위생학석사)
- ※ 의료공학과는 전공에 따라 학위종별이 상이함
의료IT공학전공/의료공간디자인학전공/의료신소재학전공(공학석사), 의공학전공(의공학석사)
- ※ 의과학과 시과학전공 수여학위명을 시과학석사 → 이학석사로 변경(201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)

2. 박사학위과정

| 계 열 | 학 과 | 연도별 개설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학위종별 | 강의 장소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'01 | '02 | '03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 | '11 | '12 | '13 | '14 | '15 | '16 | '17 | '18 | | | |
| 인문·사회 | 경영학과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경영학박사 | 대전 캠퍼스 |
| | 행정학과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행정학박사 | |
| | 병원경영학과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보건학박사 | |
| | 상담심리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문학박사 | |
| | 교육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교육학박사 | |
| | 군사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군사학박사 | |
| 자연·과학 | 화학과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이학박사 | |
| | 보건학과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보건학박사 의료뷰티학박사 | |
| | 치유선교학과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치유선교학박사 | |
| | 간호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간호학박사 | |
| | 의과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이학박사 | |
| 공 학 | 제약공학과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제약공학박사 | |
| | 의료공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/ | / | ○ | ○ | ○ | 공학박사 | |
| 의 학 | 의학과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의학박사 | |
| 입학정원 | | 12 | 12 | 12 | 12 | 12 | 12 | 20 | 20 | 20 | 20 | 27 | 32 | 36 | 36 | 36 | 36 | 36 | 36 | 36 | | |

- ※ 병원행정관리학과→병원경영학과로 학과명 변경(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
- ※ 병원행정관리학과 수여학위명을 병원행정관리학박사 → 병원경영학박사로 변경(2014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)
- ※ 상담심리학과 수여학위명을 철학박사 → 문학박사로 변경(2014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)
- ※ 특수교육학과→교육학과로 학과명 변경(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
- ※ 보건학과는 전공에 따라 학위종별이 상이함
보건학전공/안경광학전공/임상병리학전공/작업치료학전공(보건학박사), 의료뷰티학전공(의료뷰티학박사)
- ※ 병원경영학과 수여학위명을 병원경영학박사 → 보건학박사로 변경(201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)

<별표2>특수대학원(경영사회복지, 보건복지, 군사경찰행정, 상담, 바이오비임상) 입학정원 및 개설학과(전공) 학위종별(개정 2005.7.11)(개정 2006.2.13)(개정 2006.11.1)(개정 2006.11.15)(개정 2007.10.17)(개정 2008.8.12)(개정 2010.6.2)(개정 2011.5.31)(개정 2012.6.4)(개정 2012.8.20)(개정 2013.6.19)(개정 2013.8.22)(개정 2013.11.04)(개정 2014.08.06)(개정 2014.10.02)(개정 2015.02.13)(개정 2015.10.06)(개정 2016.10.10)(개정 2017.08.17.)

| 대학원 (개설과정) | 계 열 | 학 과 | 연도별 개설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학위종별 | 강의 장소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| | | '96 | '97 | '98 | '99 | '00 | '01 | '02 | '03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 | '11 | '12 | '13 | '14 | '15 | | | '16 | '17 | '18 |
| 경영사회복지 대학원 (석사) | 인문 사회 | 경영학과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경영학석사 | 대전 캠퍼스 | |
| | | 행정학과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행정학석사 | | |
| | | 행정상담학과 | | | |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행정학석사 | | |
| | | 사회복지행정학 과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사회복지학석사 | | |
| | | 사회복지학과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사회복지학석사 | | |
| | | 병원경영학과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| 경영학석사 |
| | | 정보산업학과 | | | |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| 경영학석사 |
| | | 전자상거래학과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| 경영학석사 |
| | | 군사학과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| 군사학석사 |
| | | 경찰행정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| 경찰행정학석사 |
| | | 호텔관광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 호텔관광학석사 |
| | | 세무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/ | / | | 경영학석사 |
| 입학정원 | | | 40 | 16 | 31 | 31 | 51 | 51 | 51 | 51 | 36 | 41 | 41 | 36 | 36 | 36 | 36 | 34 | 25 | 25 | 25 | 20 | 23 | 18 | 18 | | |

- ※ 2012.3.1.부로 경영행정대학원 → 경영사회복지대학원 명칭 변경
- ※ 의료관광학과 → 의료관광마케팅학과 명칭 변경(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
- ※ 의료관광마케팅학과 → 호텔관광학과 명칭 변경(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
- 의료관광마케팅학과 수여학위명은 의료관광학석사 유지

| 대학원 (개설과정) | 계 열 | 학 과 | 연도별 개설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학위종별 | 강의 장소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| | | '96 | '97 | '98 | '99 | '00 | '01 | '02 | '03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 | '11 | '12 | '13 | '14 | '15 | | | '16 | '17 |
| 보건복지 대학원 (석사) | 자연· 과학 | 보건학과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보건학석사 | 대전 캠퍼스 |
| | 인문· 사회 | 병원경영학과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보건학석사 | | |
| | 자연· 과학 | 운동처방학과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운동처방학석사 | |
| | | 실버서비스산업학 과 | | | | | | | |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보건학석사 | |
| | | 치유선교학과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치유선교학석사 | |
| | | 안경광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안경광학석사 | |
| | | 작업치료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보건학석사 | |
| | | 임상병리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보건학석사 | |
| | | 물리치료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물리치료학석사 | |
| | | 유전상담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유전상담학석사 | |
| | | 의료뷰티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의료뷰티학석사 | |
| 입 학 정 원 | | | | | | | | | | 20 | 50 | 50 | 50 | 40 | 44 | 57 | 57 | 57 | 65 | 65 | 68 | 70 | 70 | 70 | 67 | |

- ※ 2012.8.20.부로 병원관리학과 수여학위명은 병원경영학석사 → 보건학석사로 변경
- ※ 병원관리학과 → 병원경영학과로 명칭 변경(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
- ※ 의료뷰티학과는 일반대학원→보건복지대학원으로 소속변경(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

| 대학원 (개설과정) | 계 열 | 학 과 | 연도별 개설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학위종별 | 강의 장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|
| | | | '96 | '97 | '98 | '99 | '00 | '01 | '02 | '03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 | '11 | '12 | '13 | | | '14 | '15 | '16 | '17 | '18 | | | | | | | | | |
| 군사경찰행정 대학원 (석사) | 인문· 사회 | 군사학과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/ | / | /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군사학석사 | 대전 캠퍼스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국방공무원정책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행정학석사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군상담심리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군심리학석사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예비전력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/ | / | / | / | / | 예비전력학석사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군.경상담심리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/ | / | 군.경심리학석사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경찰행정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행정학석사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예비전력지휘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예비전력학석사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통일전략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정치학석사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재난안전소방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공학석사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입 학 정 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25 | 30 | 30 | 30 | 15 | 15 | 15 | 15 | 15 | 15 | 15 | 18 | |

※ 2012.3.1.부로 국방관리대학원 → 군사경찰행정대학원으로 명칭 변경

※ 국방예비전력학과 → 예비전력지휘학과로 명칭 변경(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

| 대학원 (개설과정) | 계 열 | 학 과 | 연도별 개설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학위종별 | 강의 장소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
| | | | '96 | '97 | '98 | '99 | '00 | '01 | '02 | '03 | '04 | '05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 | '11 | '12 | '13 | | | '14 | '15 | '16 | '17 | '18 | | | | |
| 상담대학원 (석사) | 인문· 사회 | 상담심리학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상담심리학석사 | 대전 캠퍼스 | | | | | | |
| | 입 학 정 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14 | | 20 | 25 | 25 | 25 | 30 | 25 |

